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717호)
- 엄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203호)
- 이해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789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4
1. 장병내일준비적금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4

I. 개요

1.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7717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조인철의원 등 16인

(2) 제 안 일 : 2026. 3. 24.

(3) 회 부 일 : 2026. 3. 2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사회복귀 준비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 및 물가 상승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군 복무로 인한 학업 및 경력 단절, 경제활동의 공백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됨.

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규정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기반 마련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9제1항).

2. 임태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20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태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4. 9.

(3) 회 부 일 : 2026. 4. 1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병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복무기간 동안 해당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전역 후 사회진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로, 청년층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해당 특례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9제1항).

3. 이해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789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해민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6. 5. 4.

(3) 회 부 일 : 2026. 5. 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병내일준비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해당 조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고물가 및 고금리 등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사회 초년생인 병역의무 이행자들이 전역 후 학업 복귀나 취업 준비를 위해 필요한 초기 자본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행 세제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여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사회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경제적 기반 마련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 19제1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장병내일준비적금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현 행	조인철의원안	엄태영의원안	이해민의원안
☐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제91조의19) ☐ 가입대상 : 현역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시행령(제93조의5) :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의무소방, 의무경찰, 대체복무요원 ☐ 납입한도 : 월 55만원 ☐ 비과세기간 : 복무기간(24개월 한도) ☐ 적용기한 : 가입일 기준 2026년 12월 31일까지	☐ 적용기한 5년 연장 ☐ 가입대상 : (현행과 같음) ☐ 납입한도 : (현행과 같음) ☐ 비과세기간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가입일 기준 2031년 12월 31일	☐ 적용기한 3년 연장 ☐ 가입대상 : (현행과 같음) ☐ 납입한도 : (현행과 같음) ☐ 비과세기간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가입일 기준 2029년 12월 31일	☐ 적용기한 4년 연장 ☐ 가입대상 : (현행과 같음) ☐ 납입한도 : (현행과 같음) ☐ 비과세기간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가입일 기준 2030년 12월 31일

* 조인철의원안 2026. 3. 24. 발의(의안번호 17717), 엄태영의원안 2026. 4. 9. 발의(의안번호 18203), 이해민의원안 2026. 5. 4. 발의(의안번호 18789)

☐ 국방부는 현역병·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등(이하 “현역병등”)이 복무기간 중 월급의 일부를 적립하고 전역 후 사회 복귀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인 ‘장병내일준비적금’ 제도를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가입 대상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의무경찰 등으로 한정하고, 개인별 납입금(납입한도: 월 55만원)에 원금의 100%를 추가 지원하는 매칭지원금 제도를 병행하고 있음.

또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조세특례제한법」¹⁾은 장병내일준비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²⁾에

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가입 당시 현역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현역병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하 이 조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부터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적금(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무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1.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하는 금액: 월 40만원

2.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하는 금액: 월 55만원

② 금융회사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해당 적금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5(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법 제91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적금 가입 당시 잔여 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1)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3.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4.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

5. 「병역법」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② 법 제91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적금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국방부장관·병무청장·경찰청장·소방청장·해양경찰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적금일 것

2. 적금통장의 표지에 “장병내일준비적금통장”이라는 문구를 표시할 것

③ 법 제91조의19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시 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전역하는 경우에는 해당 적금의 계약 만기일을 법 제91조의19제1항 본문의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종료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본문 생략)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계좌 수는 2025년 기준 41만 5천 좌임.

[장병내일준비적금 개요]

구 분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지요원 등
가입기간	1개월 이상 ~ 24개월 이하 (군 복무기간으로 한정)
협약은행	14개 은행(우정사업본부,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금리	기본금리 5%
적립한도	월 55만원(2025년부터)
매칭지원	납입 원금 100% 매칭
세제혜택	이자소득 비과세(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자료: 국방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계좌 수 현황]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좌 수	334,428	329,537	501,444	435,654	423,636	415,153

자료: 국방부, 전국은행연합회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계급별 병사봉급추이]

(단위: 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봉급	병장	216,000	405,700	405,700	540,900	608,500	676,100	1,000,000	1,250,000	1,500,000	1,500,000
	상병	195,000	366,200	366,200	488,200	549,200	610,200	800,000	1,000,000	1,200,000	1,200,000
	일병	176,400	331,300	331,300	441,700	496,900	552,100	680,000	800,000	900,000	900,000
	이병	163,000	306,100	306,100	408,100	459,100	510,100	600,000	640,000	750,000	750,000
비교 (인상률, %)		9.6	87.8	0.0	33.3	12.5	11.1	47.9	25.0	20.0	-

자료: e-나라지표

□ 한편,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이자소득세 면제에 따른 조세지출과 납입금 매칭 지원을 위한 재정지출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세지출 규모는 2024년 및 2025년 각각 48억원, 94억원 규모이고, 2026년은 104억원 규모의 조세지출이 예상됨. 재정지출은 매칭률 확대(2022년: 33%, 2023년: 71%, 2024년: 100%)에 따라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2024년 및 2025년은 각각 1조 36억원, 1조 4,350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2026년의 경우 1조 6,587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음.

[장병내일준비적금 관련 조세지출 및 재정지출]

(단위: 억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조세지출		2	20	48	94	104
재정지출	매칭지원금 및 1% 이자지원금 ³⁾	904	5,014	10,036	14,350	16,587

* 2026년 조세지출 및 재정지출 수준은 전망치 및 예산안 반영 수치

자료: 국방부

3) 2023년까지는 1%p 이자 지원을 하였으나, 매칭률 확대에 따라 2024년부터 1% 이자지원금은 폐지

□ 각 개정안은 현역병등의 합리적 저축습관 형성을 돕고,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병내일준비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조세특례를 연장하려는 것임.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조세특례는 국방의 의무⁴⁾를 이행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군 복무로 발생하는 경제활동 중단 및 학업·경력 단절의 기회비용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전함과 동시에 병역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편, 3건의 개정안은 적용기한의 연장 기간을 각각 상이하게 정하고 있는데(2031년 12월 31일(조인철의원안, 5년), 2029년 12월 31일(엄태영의원안, 3년), 2030년 12월 31일(이해민의원안, 4년)),

적용기한의 연장 기간과 관련하여,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⁵⁾.

문 의 처
02)6788-5150

4) 「대한민국헌법」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5) 재정경제부는 제도의 타당성·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년 세법개정시 적용기한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임.